

평창군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·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1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 근거 조항 재정비
- 나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(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신설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하여 지역서민 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근거 조항 재정비 함(안 제12조2)
 -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8시까지의 범위로 한다
 -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한다
 - 영업시간 제한과 제1항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서협의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'12. 9. 19 ~ 10. 9(21일간), 제출의견 없음
- 마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”를 “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제한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”를 “제한은”으로, “8시까지 한다.”를 “8시까지의 범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

제14조의2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제1항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- ③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으려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 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)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 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설>

② 제1항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제1항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<신 설>

③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으려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 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)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없음

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
연락처	(033) 330 - 2761

관계법령

□ 유통산업발전법

제12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

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영업시간 제한
2. 의무휴업일 지정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2. 1.17]